



### 1-4 지방입국관리관서에서의 수속

- 다음의 신청 · 신고를 해야 합니다. ①~ ③에 대해서는 새로운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.
  - ①이름, 생년월일, 성별, 국적 · 지역을 변경한 때에는 14 일 이내에 신고하십시오.
  - ②영주자 (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은 교부로부터 7 년간입니다.) 및 16 세 미만인 분으로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이 16 세 생일로 되어 있는 분은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체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신청을 하십시오.
  - ③체류카드의 분실, 도난, 소실 등을 했을 때에는 14 일 이내에 체류카드의 재교부신청을 하십시오.
  - ④취로자격이나 유학생 · 연수생 분은 소속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, 「일본인의 배우자 등」 「영주자의배우자 등」 등의 그 배우자로서의 신분자격으로 체류하는 분은 배우자와 이혼 · 사별한 경우에 14 일 이내에 신고하십시오.
- 체류기간갱신허가나 체류자격변경허가 등의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.